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99

발의연월일: 2022. 4. 26.

발 의 자:태영호·김상훈·정우택

김미애 · 김선교 · 김성원

유경준・金炳旭・조태용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천만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배우자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아니하 고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

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취득세 감면"을 "취득세 면제"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을 "5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다.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감면대상"을 각각 "면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받은"을 "면제받은"으로, "감면된"을 "면제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 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 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 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 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 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①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법률 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 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 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 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을----------5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

로	취득	투하	는	경우	에 -	는	다	<u> </u>	각
호	의 -	구분	에	따라	20)23	년	12	<u>월</u>
319	일까	기	기	방세틑	1	감덕	변(여)	경
<u>우</u>	Γ	지병	남세	법」	ス	13	조:	의2	의
세 :	율을	ろ	남용	하지	Ċ	トレ	한	다)	한
<u>다</u> .	<u>다</u>	만,	취	득 자기	}	미	성년	<u> </u> 기	.인
경-	우는	제	외형	한다.					

-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1. (생 략)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u>·</u> 한다. <u><단서 삭제></u>	<u>면제</u>
<u><</u> 삭 제>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 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 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 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 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 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한다.

가. ~ 다. (생 략)

- 3. 4.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u>감</u> 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u>감면된</u>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 략)
- ⑤・⑥ (생 략)

<u>면제대상</u>
<u>면제대</u>
<u> 상</u>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④ <u>면</u>
<u>제받은</u>
<u>면제된</u>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